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반주택 및 고령자주택)

1. 공급현황

단지	신청 유형	공급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 · 난방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계	
		계	일반공급		계	전용	주거 공용					
일반	고령자		우선 공급									
강일5	전용49㎡	372	119	48	205	73.333	49.900	23.433	1.421	23.610	98.364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강일7	전용39㎡	316	93	56	167	58.214	39.900	18.314	1.440	21.395	81.049	

단지	신청 유형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해당 단지(동)	건물 최고 층수	입주 예정	위치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강일5	전용49㎡	36,300	3,630	32,670	240,700	5단지(502동 ~ 505동)	13층 ~ 15층	'09.8	강동구 강일동
강일7	전용39㎡	26,660	2,666	23,994	207,400	7단지(701동 ~ 702동, 704동 ~ 706동)	11층 ~ 14층	'09.7	

- 전용49㎡는 6종(49A, 49A1, 49B, 49B1, 49C, 49C1), 전용39㎡는 4종(39A, 39A1, 39B, 39B1)이 있고, 유형별 면적은 상이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위 주택의 전용49㎡ 면적은 49A형, 전용39㎡ 면적은 39A형 기준임)
- 공급호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된 호수를 말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거실발코니 확장(전용 49㎡) 및 발코니샷시는 공사에서 일괄시공하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배치된 단지이며 임대주택 각 동별로 1층과 2층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립되어 있음
- 강일지구내 초등학교는 2009년 9월, 중·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 예정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2.24)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39㎡만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572,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818,440원이하	
	5인가구	2,921,750원이하	
6인이상가구	3,359,400원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① 만65세 이상 ② 만60세 이상 ③ 만60세 미만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9㎡만 신청 가능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만 신청이 가능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3.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아래 순위에 따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1,837,710	2,572,800	
4인	2,013,170	2,818,440	
5인	2,086,960	2,921,750	
6인이상	2,399,570	3,359,400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송파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09.2.2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로 판단하며 신청접수일까지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로 봄

▶ 우선공급

대 상 자	입 주 자 선 정 방 법
① 노부모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4.2.24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함)
③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3자녀이상가구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89.2.25 이후 출생자)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⑦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⑧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⑨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⑩65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4.2.24 이전) 고령자
⑪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⑫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자(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함)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만20세 미만)자녀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3점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3점 (전용면적 49㎡만 해당)		

⑨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39㎡만 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7.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1 내지 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⑤,⑥,⑧,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만20세 미만(89.2.25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49.2.24이전)인 자에 한함] 를 말함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일반공급(고령자)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만65세 이상('44.2.24 이전)인 자 ② 2순위 : 만60세 이상('49.2.24 이전)인 자 ③ 3순위 : 만60세 미만('49.2.25 이후)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75세 이상 :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 1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 우선공급(신혼부부)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8항)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1,837,710	2,572,800
	4인	2,013,170	2,818,440
	5인	2,086,960	2,921,750
	6인이상	2,399,570	3,359,400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3순위 :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 우선공급 배정호수

지구명	유형	계	노부모 부양자	장애 인	국가유공 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 로 자	3자녀 이상 가구	복합 이탈 주민	한부 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영구임대 중 자 상 실 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등	신혼 부부
강일5	전용49㎡	205	6	6	12	6	6	6	6	6	6	16	32	97
강일7	전용39㎡	167	5	5	10	5	5	5	5	5	5	13	26	78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4. 신청접수일정

구 분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청장소
인터넷청약자	2009.3.2(09:00) ~ 3.4(17:00)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자	인터넷청약 (www.i-sh.co.kr)
	2009.3.5(09:00 ~ 17:00)	일반공급 2순위자	
	2009.3.6(09:00 ~ 17:00)	일반공급 3순위자	
방문접수자	2009.3.2 ~ 3.4(09:00 ~ 17:00)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자	SH공사 1층 로비 (지하철 3호선 대청역)
	2009.3.5(09:00 ~ 17:00)	일반공급 2순위자	
	2009.3.6(09:00 ~ 17:00)	일반공급 3순위자	

-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결과는 2009.3.5 09:00 SH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함

5. 신청 안내

- ※ 아래 서류 이외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제출하오니, 신청자는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일 계약체결 시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부양여부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방문신청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
 - 3자녀이상 우선공급신청자
 -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계존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만 해당)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1통(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및 도장
 - ※ 제3자 신청시(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신청으로 간주)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도장 및 주민등록등본1통)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인터넷 신청안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 부양여부 등] 당첨 취소되오니 신문광고나 주택공급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소득은 반드시 2007년도 소득금액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등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 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소득 금액 등을 확인후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회원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함.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임)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09.4.8(수)**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SH공사 게시판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SH공사 1층 장기전세팀**

▶ **계약일시 : 2009.5.4(월) ~ 5.8(금) 09:00 ~ 17:00**

▶ **구비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터넷청약자만 해당)
 - 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65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직계존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⑥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함
 -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⑦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2008년, 2009년 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08년('09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08년('09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 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07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

※ 소득 입증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⑧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제조업체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차상위계층(전용면적 49㎡만 해당)	차상위계층증명서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전용면적 39㎡만 해당)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전용면적 39㎡만 해당)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사무소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전용면적 39㎡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소득평가액증명서류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전용면적 39㎡만 해당)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통일부
일군위안부(전용면적 39㎡만 해당)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전용면적 39㎡만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 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사무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이 추천하는 자(전용면적 39㎡만 해당)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용면적 39㎡만 해당)	해당증빙서류	해당기관

⑨ 우선공급대상자 준비서류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구청장 추천서	시청,구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자격상실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관리사무소

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

⑪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 중 인터넷청약자
만 해당)

※ 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로 간주하며,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8.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세대(본인+ 배우자+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샷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등에 실내의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강일지구 2, 5단지 및 6단지와 7단지 사이에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인접 단지는 주간 소음 발생이 우려됩니다.
- 강일지구 인근에 강일2지구 공사가 2010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소음, 분진 및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 소음 관련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9. 임대 문의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시프트콜센터), 02-3410-7448~7454
- 당첨확인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SH공사 게시판
- ※ 유선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본주택 공개

- ※ 견본주택 방문 시는 주차공간이 협소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강 일 지 구	
위 치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지구내	
교통편	상일동역(5호선)③번 출구 버스(3413, 361, 마을버스5번)승차 강동공용차고지 하차	
기 간	2009.2.27(금) ~ 3.4(수) 10:00 ~ 17:00	
동호수	39㎡	•일반: 705동 305호 •고령자: 705동 205호
	49㎡	•일반: 505동 301호 •고령자: 505동 201호
약도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9. 2. 24

SH공사 사장